

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서정호

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최정훈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22년 9월 6일
- 회부일자 : 2022년 9월 8일

3. 제안이유

- 상위 법령인 「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인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, 불명확한 조문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며, 용어 변경, 표기 정정 등 조례 정비를 통해 해당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대상 건축물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(안 제12조)
 - “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”, “그 밖에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도지사가 인정하는 용도” 내용 추가

- 시장·군수가 정하는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할 의견의 중요사항(안 제7조)과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에 대한 용자금 지원 우선 선정 및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용자금 제한내용 삭제(안 제13조)
- 중복지원을 제한하는 경우를 명백히 함(안 제16조)
- 기타 용어 변경, 표기 및 띄어쓰기 정정 등
 - 충청북도 도지사 → 충청북도지사(안 제4조제2항)
 -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→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(안 제5조제1항)
 - 충청북도 소속 → 업무담당(안 제9조제2항제1호)
 - 한차례 → 한 차례(안 제9조제3항)
 - 사퇴하고자 하는 → 해촉을 원하는(안 제9조제4항제1호)
 - 보조 또는 용자지원 → 지원(안 제12조제1항)

5. 검토의견

-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 - 첫째, 「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‘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대상’ 사항을 안 제12조제2항을 신설하여 해당 지원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,
 - 둘째, 시장·군수가 정하는 사항인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할 중요사항(제7조)과 실질적 활용 가능성이 없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에 대한 용자금 지원 우선 선정 및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용자금 제한내용 등(제13조제1

- 항제1호 및 제2호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)을 각 삭제하며,
- 셋째, 중복지원을 제한하는 경우를 도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 받는 경우에 제한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하고(안 제16조).
 - 그 밖에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맞춤법에 따라 표기를 정정하고, 보다 적합한 용어 및 표현으로 변경하였음(안 제4조, 제5조, 제9조, 제12조 등)

○ 해당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